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정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207

발의연월일: 2025. 4. 29.

발 의 자:이정문・이상식・강훈식

박선원 · 손명수 · 한민수

이학영 · 문진석 · 조승래

복기왕・박 정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5년 4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(8인)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을 받을 자녀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 협의 로 지정되거나 주로 부양한 자녀가 없는 경우 나이가 많은 자녀를 선 순위 유족으로 정하는 제13조제2항제3호를 헌법불합치로 선고하였음.

헌법재판소의 연장자 우선조항에 대한 판단을 보면 국가유공자의자녀 중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가 있을 수 있는데 연장자 우선조항은 이러한 개별적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이가 많음을 선순위 수급권자 선정의 최종 기준으로 삼고 있어 국가유공자 유족의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라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입법취지에 배치된다고 판단하였음.

이에 기존 연장자 우선조항을 유족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로 개정하여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입법취지를

달성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하고자 함(안 제13조제2항). 법률 제 호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제3호 전단 중 "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"을 "대통령 이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3조(보상금 지급순위) ① (생	제13조(보상금 지급순위) ① (현		
략)	행과 같음)		
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	2		
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			
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			
라 보상금을 지급한다.			
1. • 2. (생 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		
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	3		
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<u>나이가</u>	대통령		
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	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가		
하되, 같은 순위자가 국가유공	<u>장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</u> -		
자의 부모인 때에는 제12조제			
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			
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.			
이 경우 보상금의 분할 지급			
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			
통령령으로 정한다.			
	,		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		